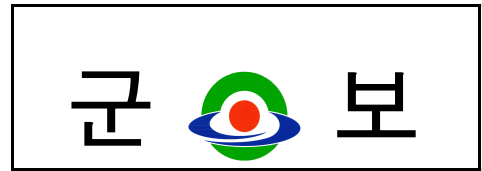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191호 2019. 9. 26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 예천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19-1083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「예천군민의 날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예천군민의 날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9월 26일

예 천 군 수



1. 개정이유

예천군민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타행사와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신설

○비슷한 시기에 대규모 행사·축제가 개최되거나,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날을 지정하여 군민의 날 기념행사 시행(안 제3조)

3. 개정조례안

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마. 입법예고 결과 :
- 바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- 사. 성별영향평가 :

5. 의견제출

- 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서면이나 이메일(ggalguree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항목별 의견 : 찬·반 여부와 그 사유

나.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기타 참고사항

- 보내실 곳 : 예천군청 총무과(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- 전화 : 054-650-6083, 팩스 : 054-650-6089

-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(<http://www.yecheon.go.kr/>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예천군민의 날 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예천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군발전을 위한 군민화합”을 “군 발전을 위한 군민 화합”으로, “예천군민의 날(이하 “군민의 날”이라 한다)”을 “예천군민의 날”로 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군민의 날”을 “예천군민의 날(이하 “군민의 날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새군민상”을 “군민상”으로, “각종문화예술등”을 “각종 문화예술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 등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도의 날을 정하여 할 수 있다.

1. 군민의 날과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·축제가 있는 경우
2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4조의 제목 “(운영규칙)”을 “(시행규칙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조례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조례 시행에”로, “군수가 따로 시행 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일깨우고 나아가 <u>군발전을 위한 군민화합의 날</u> 로 삼고자 <u>예천군민의 날</u> (이하 " <u>군민의 날</u> "이라 한다)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 <u>군 발전을 위한 군민 화합</u> -- ----- <u>예천군민의 날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군민의 날) <u>군민의 날</u> 은 매년 10월 16일로 한다.	제2조(군민의 날) <u>예천군민의 날</u> (이하 " <u>군민의 날</u> "이라 한다)----- -----.
제3조(행사) 군민의 날에는 기념행사와 <u>새군민상</u> 시상, 군민체전, <u>각종문화예술등</u> 군민의 화합·발전을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3조(행사) ① ----- ----- <u>군민상</u> ----- -- <u>각종 문화예술 등</u> ----- ----- -----.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 등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도의 날을 정하여 할 수 있다. 1. <u>군민의 날과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·축제가 있는 경우</u> 2. <u>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
제4조(운영규칙) 이 <u>조례시행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군수가</u> 따로 <u>시행 규칙</u> 으로 정할 수 있다.	제4조(<u>시행규칙</u>) -- <u>조례 시행에</u> ----- <u>규칙</u> ----- ----- ----- --.